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7.

보건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2월 10일, 이수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2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 3. 12.)

상정, 축조심사

제434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 4. 2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4회국회(임시회 · 폐회중) 제1차 전체회의(2026. 4. 29.)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수진의원)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증권의 매매·대여 등을 규정하면서,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도 기금을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

민연금공단은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방식 외에 사모투자, 부동산 투자,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투자를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대체투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에도 대체투자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 고려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에 대한 고려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의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동시에 대상을 확대하고, 기금운용지침에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의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바로 회부(2026. 3. 10.)

###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의 최대 증대를 최우선 가치로 고려하며 관리·운용되어야 하므로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의 ESG 투자를 의무화하는 강행규정으로의 개정은 신중한 필요가 있음.
- ESG 투자와 기금투자수익률이 반드시 상충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시 ESG를 고려함으로써 수익성에 미칠 장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ESG 투자의 원칙이 법률에 규정될 필요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도 ESG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각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함.

##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